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소규모 사업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2024년 3월


서울노동권익센터

목 차

1.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1
2.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8
3. 건강디딤돌 사업	11
4. 직종별 건강진단	16
5. 뇌·심혈관 고위험 근로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9
6.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23
7. 안전동행 지원사업	25
8.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27
9.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30
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32
1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37
1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41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자료 발췌, 가공

1.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 목적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 완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 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소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2호~24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

(건설업)		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20억 미만(65%), 50억 미만(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불가)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8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 클린사업 추진절차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Track2(Quick-Pass)



2.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설비품목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 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 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등)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단, 호퍼로더는 단독지원 불가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지게차 캐빈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식품가공용기계(과쇄·절단·혼합기)

2.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연동장치 등)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굴착기 AVM 일체형(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 굴착기 자동안전 킥커플러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3.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 시스템비계(인증제품)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S마크 인증품)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현장 당 2개 이내

※ 보조대상 제외

-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은 추후 지원품목 제외 및 추가, 지원조건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2024년 1월 29일 기준>

번	품목명	대상설비·작업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고정식(옵션: AI화재감지기)
2		이동식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ILO형
4		인공지능형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고소작업대
7	인공지능(AI)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기본
8		흔들림 방지장치(옵션)
9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
10		충돌방지
11		자동·서행 및 방지
12		부착형 충돌방지
13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1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1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17		이동식
18		인공지능(AI) 화재감지기
19		인공지능(AI) 계측장치
20		화학물질 누출방지형
21		방폭정전기 측정기(옵션)
2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배달, 택배업 등)
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안전
24		아크제거장치
25	근력보조 슈트	근골격계 부담작업
2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근골격계 부담작업
27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귀마개
28		방진마스크
29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밀폐공간(화재·폭발장소 제외)
30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
31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3t미만 전동지게차 ※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

※ 1~30번 품목은 공단 일선기관별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나, 31번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은 별도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내 신청·접수 가능

* 옵션품목은 단독지원 불가(해당 품목 지원 시 옵션으로 선택)

* 카메라 관련 일부품목은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실시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가능(설치 확인 시 서약서 제출)

2.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 목적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산재예방 시설 용자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 ① 용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 ④ '23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 불가 ※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용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용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 용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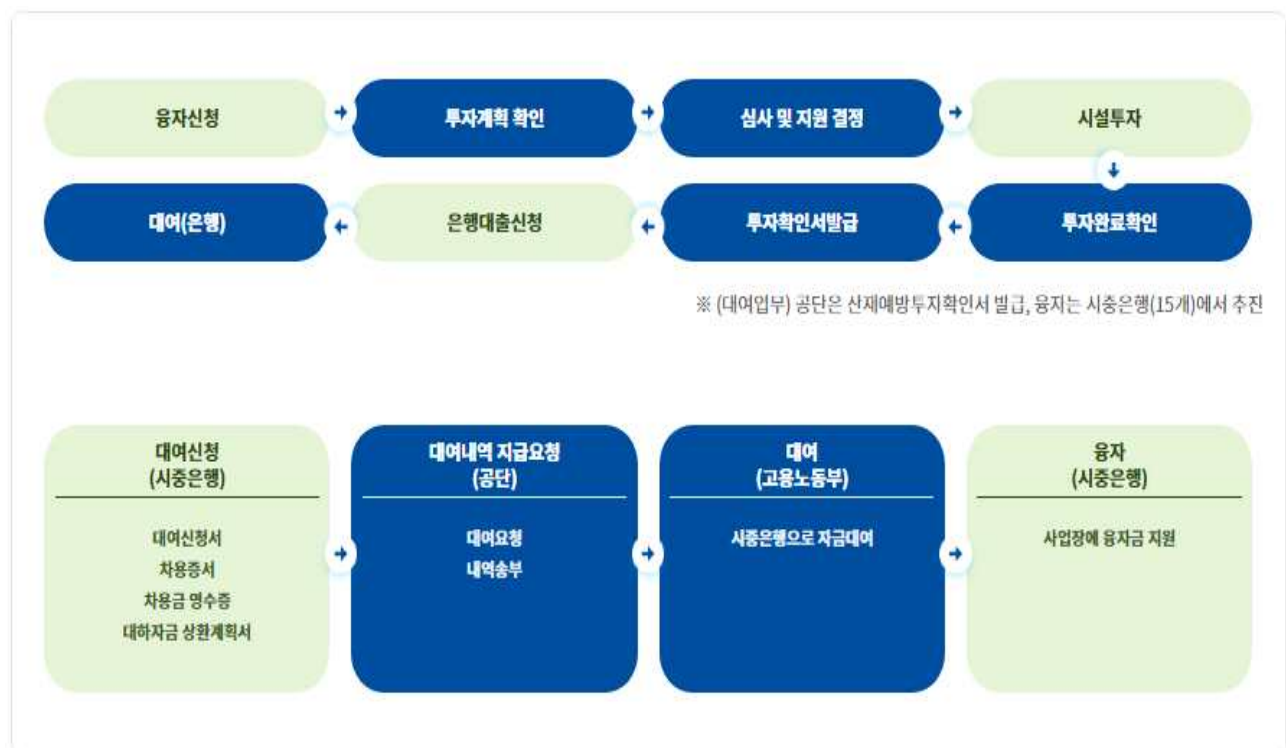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채용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용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용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 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 일선기관별 용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알림마당)

◆ 지원절차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지원설비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공구 신규 설치 및 교체(읍선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 프레스, 공작기계(CNC 머시닝 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④ 20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3.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건강 디딤돌」 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사업절차



◆ 지원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5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 지원금액

1. 작업환경측정

-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21년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의 70%를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측정비용 : 공단 산정금액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함(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 건설일용직은 원도급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변경

지원대상	지원금액
50인 미만	○ 30인 미만 : 특검비용의 100% 지원 ○ 30인 ~ 50인 미만 : 특검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 특검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 기준】 ○ (50억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 (50억~800억 미만) 특검 비용의 70% 지원 ○ (800억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계약한 원도급 공사금액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1. 공통

-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 출력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메뉴’→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신청결과확인
 -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하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3.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용청구, 비용지급, 비용지급 결과 통보,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비용청구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의 비용지급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공단은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

4. 직종별 건강진단

◆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

◆ 사업절차



◆ 지원 대상

- '23년 신규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업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 ※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 **지원 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항목)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가전제품 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방문판매업 자 ·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뇌·심혈관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뇌·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항목→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신청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 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항목→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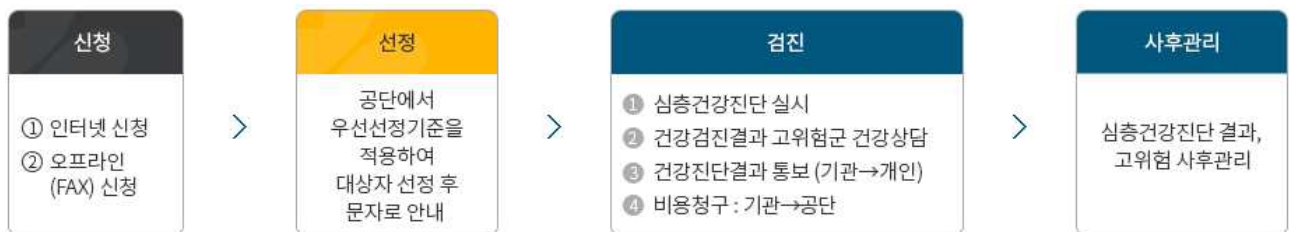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사업부	052-703-0788

5. 뇌·심혈관 고위험 근로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목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근로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 사업절차



※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함(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 메시지로 안내)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FAX 052-702-9507) 신청
-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항목→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신청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 필수

※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대상선정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로 신청결과를 통보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항목→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신청결과 확인

○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 일정 예약

- 준비 :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
- 방문 :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아래의 7가지 지원대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검진이 가능하며,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ℓ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 $\geq$ 240mg/dℓ 또는 LDL $\geq$ 160mg/dℓ 또는 중성지방 $\geq$ 200mg/dℓ
 - ④ 비만(BMI $\geq$ 30) 또는 복부비만(남 $\geq$ 90cm, 여 $\geq$ 85cm)
-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지원대상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 지원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 2)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 5)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은 제시만)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

○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중복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일자	개시일~3.31.	4.1~5.31.	6.1~7.31.	8.1~9.1.
선정일자	4.1~4.5.	6.2~6.7.	8.1~8.7.	9.2~9.6.
선정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 검사항목(심층건강진단, 초고위험군 관리)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 심층건강관리

- 지원금액 :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자부담금 : 39,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20%)
- 검사항목 :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구분	검사항목
진찰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계측검사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혈액검사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소변검사	① 요단백
정밀검사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2) 초고위험군 관리(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2회 이상)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건강상담 2회 이상
지원금액*	14만원+α**	20만원+α	20만원+α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원 추가지원

○ 검사항목 관리(심층건강진단, 초고위험군 관리)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이거나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자
- 희망자 :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전액

－ 연간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지원주기는 2주 이상

○ 문의처 : 건강증진부 052-703-0649

6.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 목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가스, 증기, 미스트 흡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대상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한도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함은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함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함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항 2호(허용기준), 3호(금지물질), 4호(허가물질), 5호(작업환경측정), 7호(관리대상)가 해당
- 문의처 : 1644-8845(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7. 안전동행 지원사업

◆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 지원대상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2.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 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 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
보조금 산정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 ※ 예시) '22년도 8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2천만원	

◆ 신청방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①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 문의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8.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 안전보건교육 등
 -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센터 및 분소 현황(23개 센터, 21개 분소)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광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간호협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간호협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대전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간호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간호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전북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간호협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거제근로자건강센터(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5
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서대구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1길 33
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
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
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 문의처 : 건강증진부 052-703-0518

9.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목적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사고수습 등 업무 담당자)하는 사람 등
- 서비스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 필요 시 전문치료 연계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센터 현황(근로자건강센터 내 설치·운영)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거제직업트라우마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5

○ 문의처 : 건강증진부 052-703-0518

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번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 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 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분쇄 또는 채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채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하. 옥내에서 거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8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	비파괴검사(X-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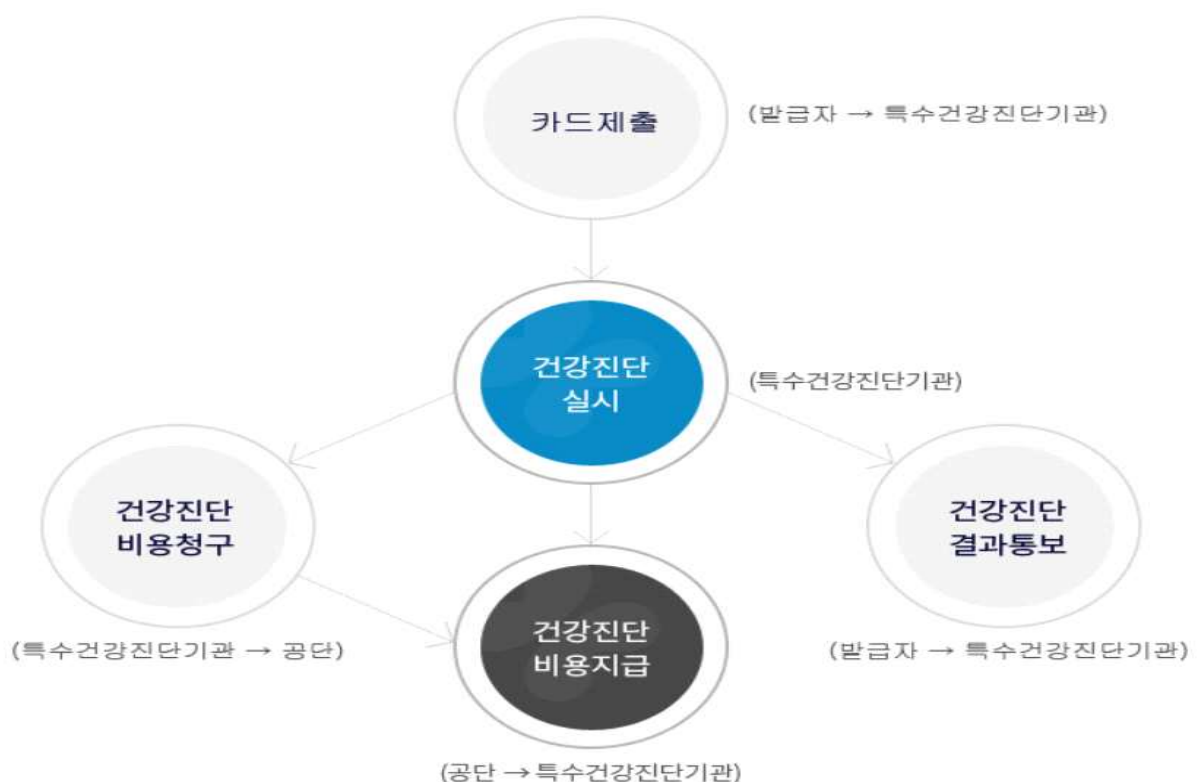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임.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함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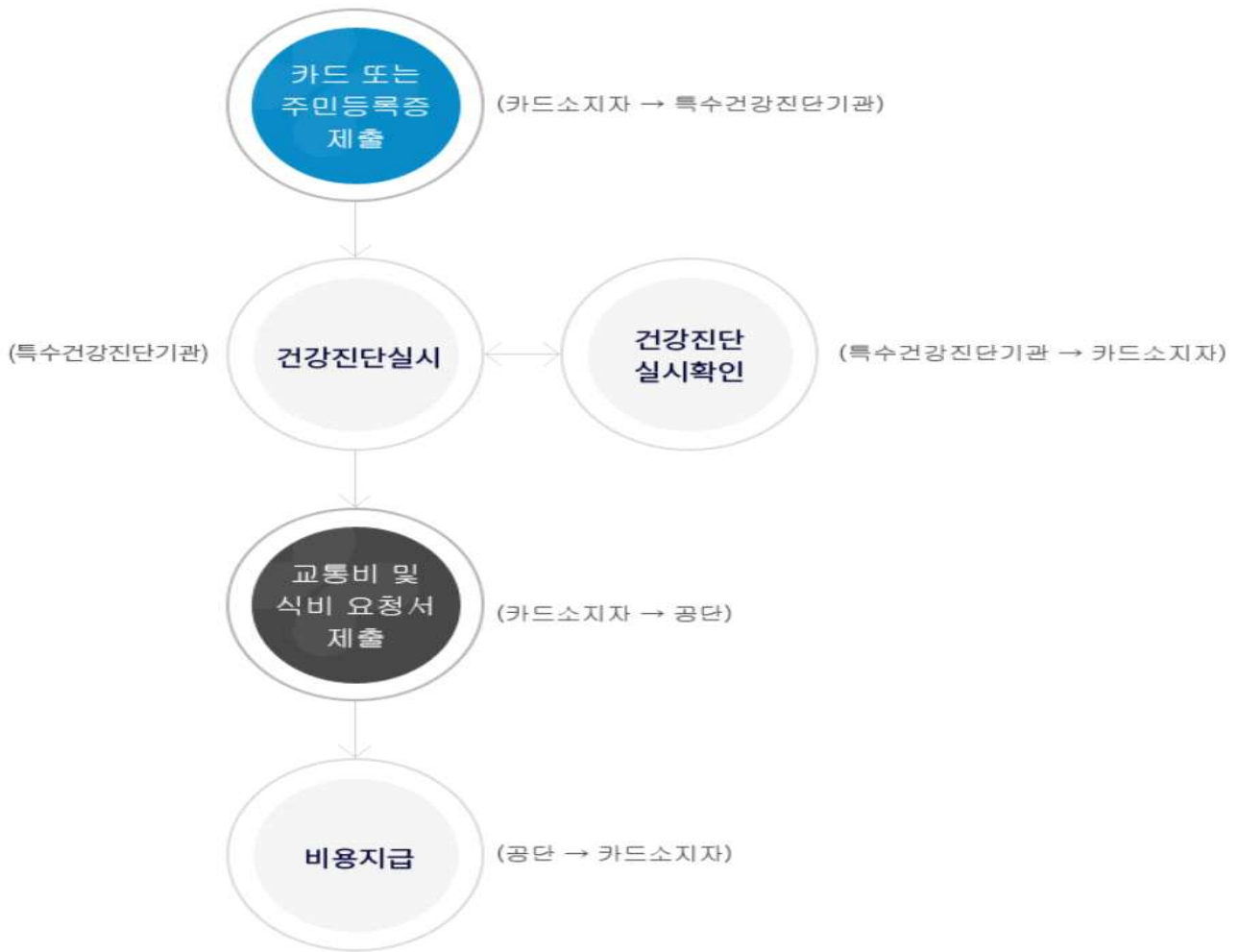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현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갈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카드를 소지한 이직 근로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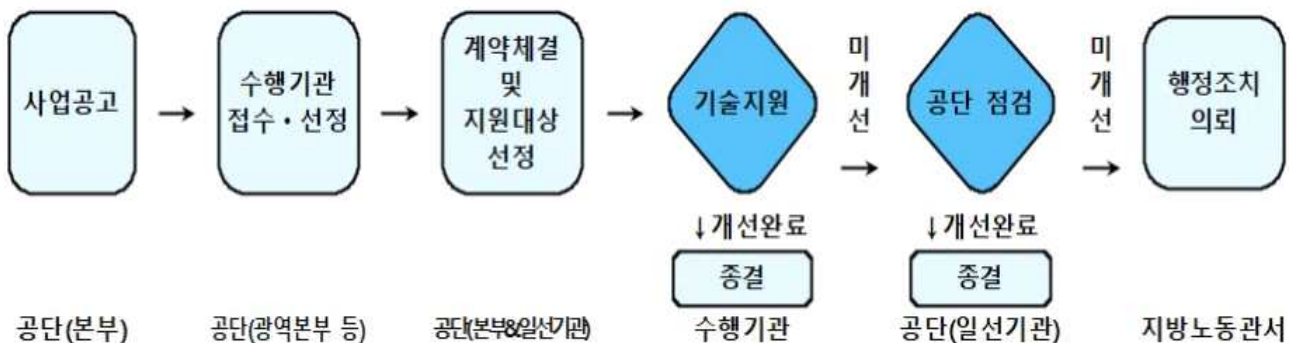
-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사업부 052-703-0788

1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사업 추진절차(분야별 공통)



○ 문의처 : 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 안전분야

- 목적 :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95,000회)
- 사업 추진방침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재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고위험사업장(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우선 선정·지원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사업장 당 최대 4회 지원)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 화학분야

- 목적 :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30,000회)
- 사업추진 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제조·취급·유통·설비 보유 사업장, 화학업종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사업장 당 최대 4회 지원)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 보건분야

- 목적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사업물량 : 71,590회)
- 사업 추진 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 건설분야

- 목적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140,000회)
- 사업 추진방향
 - 추락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고위험 건설현장 발굴·지원 강화
 - 작업진행 상황 관찰 및 위험요인 확인·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효과 극대화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원격지원 등 인적관리 강화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핵심 안전수칙 및 추락 등 사고사망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 및 개선 지원

핵심 안전수칙	- 추락 예방조치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 안전점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실시
주요 위험요인	- 지붕, 사다리,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고소작업차(대), 달비계, 철골,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사면·암반

※ 기타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개선확인 : 보호구 미착용,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주하여 조치완료 확인
- 안전교육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공유가 가능토록 맞춤형 standing 교육 실시(집합교육, 면담교육 등)
- 교육내용 : 핵심 안전수칙(추락·보호구·안전점검), 현장 주요 위험요인(안전조치 현황 및 대책)

◆ 서비스 분야

- 목적 : 50인 미만 서비스업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사고사망만 인를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62,500회)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고위험 사업장(이동식사다리 보유 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원 직적고용 음식업) 우선 선정·지원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지원 내용
 -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사고사망 위험요인	- 건물관리업 ① 추락 : 이동식 사다리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 - 음식업 ① 부딪힘 : 이륜차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 ③ 끼임 : 조리기구
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 ① 안내 : 위험성평가 제도 및 지원시스템(On Line, KRAS) ②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샘플링 실시 및 제공 - 핵심안전수칙 ① 추락예방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2인1조 작업(이동식 사다리) 등 ② 끼임예방 : 방호장치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 ③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1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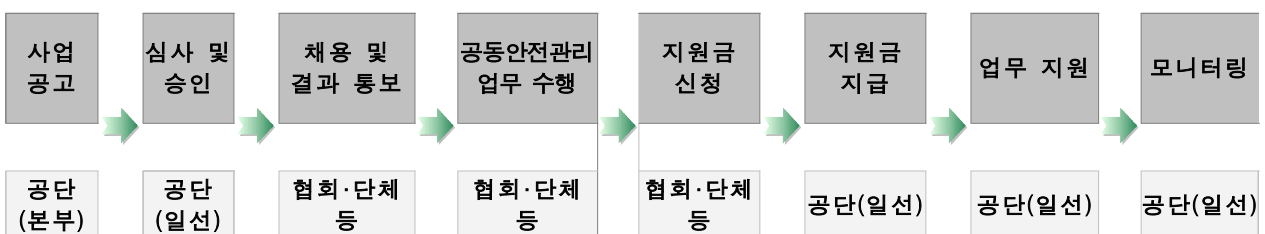
◆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 지원
 -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개요

-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 사업규모 : 600명
 - 채용 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지원금 규모 : 120억원
-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지원
 -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 가능

○ 추진절차



◆ 협회·단체 등 자격기준, 참여제한

○ 협회·단체 등 자격기준

구분	내용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 연합회, 지역조합, 사업조합 등
사업주단체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함체 * 건설업 사업주단체는 참여 불가
협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기타 단체	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참여제한

구분	내용
협동조합 등 (고용주)	-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휴면, 해산, 휴면건의, 해산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단체 등 ※ 2022년 이후 설립된 협회·단체 등은 적용제외 3) 이사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 (신청일 기준)
공동안전관리자 (근로자)	- 만18세 이상 (2004.1.1.이전 출생자)으로 기준공고일 (2023. 1. 1)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자 3) 채용 예정 단체의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속인자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름) 4) 채용 예정 단체의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단체의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 지원금 신청·정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협회·단체 등→공단)
- 신청시기 : 공동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협회·단체 등→공단)
 - 기존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 공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최근 1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또는 E-mail로 신청
- 지급결정 :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공동안전관리자 월급여의 80%(최대 25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6개월분을 선지급이 가능하고, 잔금을 연말에 정산 처리
- 중도퇴사 :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 정산 신청 시 재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
 -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 선지급 없이 연말 정산 처리
- 정산 : 연말 정산 시기, 방법 등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 서류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
- 신청기간 : 2024. 2.19.(월) 09:00~2024. 3.22.(금) 17:00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 시),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1부
- 서류접수 :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 문의처 :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공단 관할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클린사업장 조정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기관명(소재지)	관할 지역	대표전화
1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7
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2층)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35
3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4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소노타워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8
5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12
6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7층)	부산광역시	051-520-0683
7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4층)	울산광역시	052-226-0530
8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함창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3
9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6
10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8, 9, 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7
11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원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1
12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1
1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성로 473, 4층)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3
14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2층)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15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6
16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3
17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7
18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6
19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5
2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032-5100-524
2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교로 107, 13층)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25
22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23	고양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3
24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역4로 230, 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25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빛골로17번길 3, 2층)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8
26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3층)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6
27	대전세종광주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8
2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2
29	충북동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30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4

※ 후후 경기남부지사(매 30개 일선기관) 개소 후 접수 예정